

2023년 상반기 체험형 청년인턴(장애) 채용 공고

1. 채용예정인원 및 자격기준

채용형태: 체험형 청년인턴

채용인원: 총 40명

(단위: 명)

| 구분 | | 인원 | 자격조건 |
|----|-----|----|--|
| 총계 | | 40 | - |
| 본원 | 원주 | 24 | ·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·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·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등에 따른 장애인 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(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)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|
| | 서울 | 3 | |
| | 부산 | 2 | |
| | 대구 | 2 | |
| | 광주 | 1 | |
| | 대전 | 2 | |
| | 수원 | 2 | |
| | 창원 | 1 | |
| | 의정부 | 1 | |
| | 전주 | 1 | |
| 인천 | 1 | | |

※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 미만으로 채용할 수 있음

※ 입사지원서는 지원자 1인당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, 응시지역을 달리하여 중복 지원할 경우(추후 확인 포함) 모두 '부적격' 처리

응시자격에 관한 안내사항

- 임용예정일('23. 5. 15.)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34세 이하인 자 ('88. 5. 16. ~ '05. 5. 15. 출생자)에 한하여 응시 가능함

※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「병역법」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.

* 복무기간 1년 미만: 1세 / 1년 이상, 2년 미만: 2세 / 2년 이상: 3세

- 최종 합격자는 임용예정일('23. 5. 15.)부터 근무 가능해야함
-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채용 결격사유로 판단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, 합격 취소 처리 할 수 있음
 - 「병역법」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자
(군필, 미필, 면제 및 임용(예정)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)
 -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「인사규정」 제14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자
 -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
 - '22. 10. 6.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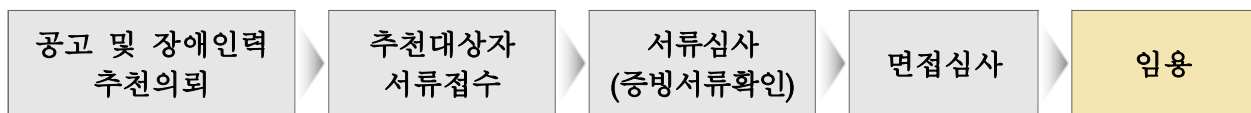
<건강보험심사평가원 「인사규정」 제14조 임용결격사유>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- 6의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9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0.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. 근무조건 등

- 근로형태: 계약에 의한 인턴(기간제 근로자)
- 계약기간: 임용일로부터 6개월(기획재정부 “2023년 공공기관 청년 일경험 사업운영 가이드라인”에 따름)
- 근무시간: 주 5일 근무, 1일 8시간[09:00~18:00(휴게시간 1시간포함)]
- 근무지역: 본원(강원도 원주시) 및 10개 지원
- 월 급 여: 2,011,000원(4대 보험료, 제세공과금 등 포함)

3. 전형절차 및 채용일정



| 전 형 | 일 정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채용공고 및 장애인력 추천의뢰 | • 3. 30.(목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의뢰 [우리원→한국장애인고용공단] ▪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채용안내 및 서류 접수 |
| 추천대상자 서류접수 | • 4. 3.(월)~4. 17.(월) 18:0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추천대상자 통보: 4. 19.(수) [한국장애인고용공단→우리원] |
| 서류심사 결과발표 | • 4. 25.(화) 17시 이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개별안내(SMS 및 E-mail) |
| 면접심사 | • 5. 2.(화) ~ 5. 3.(수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우리원 본원 교육장 등 |
| 최종 합격자 발표 | • 5. 8.(월) 17시 이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개별안내(SMS 및 E-mail) ▪ 예비합격자 5. 11.(목) 12:00까지 운영 |
| 임 용 | • 5. 15.(월) 예정 | - |

※ 상기 일정은 내·외부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변동 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을 통해 안내 예정

4. 우대사항

| 구분 | 내용 | 가산점 |
|----------|---|--|
| 취업지원 대상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취업지원)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(취업지원)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-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(취업지원 등) <p>*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,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예외적으로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산점 부여 | <p>전형별 만점의 증명서상 가점 5% 또는 10%를 부여하되,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</p> |
| 장애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(장애인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 및 제4조를 따름) | <p>전형별 만점의 5~10% (경증5%, 중증10%)</p> |

- ※ 우대사항 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('23. 4. 17.) 기준 해당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해야 함
- ※ 우대사항 중복 시 상위 가점 1개만 우대 적용

5. 채용공고 및 장애인력 추천의뢰

공고 및 추천의뢰: 3. 30.(목)

- 우리원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 추천 의뢰

6. 추천대상자 서류접수

- 기 간: 4. 3.(월) ~ 4. 17.(월) 18시
- 대 상: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추천받은 대상자
- 방 법: 응시원서 및 (필수)증빙서류 등 스캔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담당자 이메일(monyoul@kead.or.kr)로 제출
(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)
- 제출서류

| 구 분 | 제출대상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응시원서(자기소개서) ▪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※ 중증장애인은 ‘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’를 함께 제출 ▪ 입사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| 지원자 전원(필수)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(제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발급) ※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, 제대군인 확인서 등 |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주민등록초본 (병역사항, 개명사항 포함) |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개명자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기타 입사지원서 상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| 해당자에 한함 |

【 블라인드 채용 실시 안내 】

-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여 입사지원서 내 성별, 학력, 나이, 가족관계 등의 인적 사항 기재란이 없으며, 자기소개서 등 입사지원서 작성 시 블라인드에 유의
※ 단, 본인확인 용도를 위해 출생월일(MM. DD.)입력
- 면접심사 시 편견요소(성별, 나이, 학력, 가족관계 등)에 대한 정보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

7. 서류심사

- 대 상: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추천받은 대상자
 - ※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 추천대상자 통보 예정 4. 19.(수)
- 일 자: 4. 20.(목) ~ 4. 24.(월)
- 심사기준: 지원자격 충족 여부 확인 및 (필수)증빙서류 확인
- 선발인원: 적격자 전원
- 결과발표: 4. 25.(화) 17시 이후, 개별통보(SMS 및 E-mail)
 - ※ 서류심사 적격자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e-mail을 통해 면접심사 관련 안내문 송부

8. 면접심사

- 대 상: 서류심사 합격자
- 기 간: 5. 2.(화) ~ 5. 3.(수)
- 장 소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등
- 면접방법: 다대일 질의응답식 인성면접(면접위원 다수/면접자 1인)

9. 기타 사항

- 입사지원서는 채용분야의 1회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, 채용 분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공고문의 채용예정인원 미만으로 채용할 수 있음
- 입사지원서 기재착오, 누락, (필수)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

-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, 각종경력 및 신원조회 등 임용(증빙)서류 심사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원 규정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,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우리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
- 면접심사 시 본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유효기간 내 여권,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, 모바일 신분증) 지참 시 응시 가능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37조의2(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)에 따라, 장애인의 경우 사전요청 시 면접시험 응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이 가능함
 - 편의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응시자는 반드시 우리원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에 따라 응시원서 제출 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
 - 전형별 응시 대상이 되면 안내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승인 여부는 별도 안내 예정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서류 허위·착오 기재, 임용결격사유, 응시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거나 비위면직 조회결과 등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- 임용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
- 최종합격자는 임용(예정)일로부터 근무 가능해야함
- 예비후보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한하여 임용하며, 임용사유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함('23. 5. 11.(목) 12:00 까지 운영)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음

- 다만, 채용 홈페이지에 파일로 등록하여 제출한 경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
- 최종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일체 파기함 (단,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채용전형의 최종 불합격자가 제출한 채용서류를 영구적으로 보존 할 수 있음)
- 채용시험 불합격자는 채용 관련 비위 및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 (단, 평가 기준 및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등은 처리대상 제외)
- 신청기간: 5. 8.(월)~5. 22.(월)
- 접수방법: 이메일(hira1@recruityou.co.kr) 접수
- 처리안내: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, 신청내용 검토 후 답변

<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>

- ▶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
- ▶ 개인정보(응시자, 시험출제자, 평가관련자)와 관련한 사항
- ▶ 지적재산권(외부출제기관)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
- ▶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
- ※ 전형별 평가기준, 개인별 취득점수(순위)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함

-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채용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
(일정변경 등 사유 발생 시 우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)
- 기타 문의사항: ☎ 070-4896-0803

2023. 3. 30.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